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1. 제정 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한 명확화(제4조)
-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추가(제16조)
-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기한 명시(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8층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
- 담당자(이메일) : pkbjj@khug.or.kr
- 전화번호 : 051-955-5372
- 팩스번호 : 051-955-5605

4. 예고기간 단축사유(기간 20일 미달 시)

- 개정 법령 시행일자('21.1) 감안 시 적시성 있는 규정 반영 필요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 개폐 정리 - 지침 폐지에 따른 인용 지침 변경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 단, 임기만료 2월 이전에 연임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임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구성 2.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즉시 구성 ③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 -, ----- ----- ----- 2. -----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③ (현행과 같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영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한 명확화
제16조(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상근감사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근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4. (생략) ④ · ⑤ (생략)	제16조(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이 경우 추천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반영 - 상근감사 자격요건 명기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0조(임원후보 추천 등) ①~③ (생략) ④ <신설>	제20조(임원후보 추천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반영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신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비상임이사 경비 등 지급기준”에서 정한 참석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위원회 존속 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 -----“이사회 운영기준”-----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개폐 정리 -동 기준 폐지에 따른 인용 기준 변경